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상 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지정권한 근거 규정 신설(박수민 의원안)	3

I. 개요

1.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7. 3.
- (3) 회 부 일 : 2024. 7.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

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상 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지정권한 근거 규정 신설 (박수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납세지(제6조) ○ 사업자의 납세지 - 각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 <신 설> ○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함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 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지정 권한 근거 규정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u>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박수민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32)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정부가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¹⁾는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②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도록 함.

-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메타버스(Metaverse)²⁾ 등을 이용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향후 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두도록 하고 있어, 가상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지정을 위하여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 2)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함.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가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사무실 또는 주소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일종의 납세협력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가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지출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음.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07년 7조 140억원이었던 납세협력비용이 2021년 15조 442억원까지 증가하였음³⁾.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메타버스 산업 분야의 창업과 확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⁴⁾가 사이버몰을 운

3)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단위: 억원)

구분(기준연도)	1차(2007년)	2차(2011년)	3차(2016년)	4차(2021년)
전체 납세협력비용	70,140	98,878	111,179	150,442
법인사업자	39,435	50,416	57,097	52,655
개인사업자	30,705	41,137	43,106	59,876
비사업자	-	7,325	10,976	-

주: 1차 측정은 개인·법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차 측정부터 비사업자 포함
자료: 국세청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為)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영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현행법에 따른 납세지가 되는 것처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가상의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장소는 존재하므로 해당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은 해당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나, 사업자가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과세가 가능함.

둘째, 현행 과세행정 시스템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과세표준 신고, 환급 등 전반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납세지를 정할 경우 과세행정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